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4

제출년월일: 2001.7.11.
제 출 자: 평창군수

1. 제 안 이 유

2000.10.20.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규정의 미비점 보완을 내용으로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다음과같이 개정코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공공시설 위탁 관리시 허가대상, 허가기간, 사용료, 납부 방법을 위탁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5조)

나. 공정 50%이상 진척건물의 확정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으로 함 (안 제7조)

다. 최소 분할면적 미달토지 또는 1천만원 이하 재산의 매각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라.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 매각후 연체시 분할납부 규정을 삭제 (안 제22조)

마.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 기업 및 100 명 이상 고용 공장신축시 대부료를 10/1,000으로 함 (안 제23조)

바. 공유재산을 전세금으로 할때 세부규정 신설 (안 제25조의2)

사. 변상금 청문제도 신설 (안 제28조의2)

아. '81.4.30 이전 건물이 있는 토지 매각시 건물 바닥면적 2배 포함면적이 700㎡ 이하이면 한번에 매각할수 있도록 함 (안 제39조의2)

3.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별 첨"

나. 관계부처 승인: 세회 13330-996 (2001.4.4)호 표준안

다. 입법예고: 공고 2001-145 (2001.5.12)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일반시 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제11조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중 "사용허가의 제한"을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며, 제2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중 "사용허가 기간"을 "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하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4조중 "사용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사용허가"를 가각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5조중 "사용허가부의 비치"를 "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사용허가부"를 "사용·수익허가부"로 한다.

제19조의3제4호·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사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제2항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중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이상"으로 하고, 제6항중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하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⑩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 하는 때
2.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3중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를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로 한다.

제2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공용면적을 포함한다)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것 보다 군에 유리한 때
2. 인근이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92조의3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중 "한다"를 "하며,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수가 제23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

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제3항중 "하천법 제25"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제5항제3호중"(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 포함)"으로 하며, 후단부분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01.7. .
제 출 자: 평창군수

1. 제 안 이 유

2000.10.20.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규정의 미비점 보완을 내용으로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다음과같이 개정코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공공시설 위탁 관리시 허가대상, 허가기간, 사용료, 납부 방법을 위탁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5조)

나. 공정 50%이상 진척건물의 확정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으로 함 (안 제7조)

다. 최소 분할면적 미달토지 또는 1천만원 이하 재산의 매각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라.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 매각후 연체시 분할납부 규정을 삭제 (안 제22조)

마.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 기업 및 100 명 이상 고용 공장신축시 대부료를 10/1,000으로 함 (안 제23조)

바. 공유재산을 전세금으로 할때 세부규정 신설 (안 제25조의2)

사. 변상금 청문제도 신설 (안 제28조의2)

아. '81.4.30 이전 건물이 있는 토지 매각시 건물 바닥면적 2배 포함면적이 700㎡ 이하이면 한번에 매각할수 있도록 함 (안 제39조의2)

3.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별 첨"

나. 관계부처 승인: 세회 13330-996 (2001.4.4)호 표준안

다. 입법예고: 공고 2001-145 (2001.5.12)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일반시 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제11조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중 "사용허가의 제한"을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며, 제2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중 "사용허가 기간"을 "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하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4조중 "사용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사용허가"를 가각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5조중 "사용허가부의 비치"를 "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사용허가부"를 "사용·수익허가부"로 한다.

제19조의3제4호·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지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사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제2항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중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이상"으로 하고, 제6항중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하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⑩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 하는 때
2.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3중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를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로 한다.

제2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공용면적을 포함한다)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것 보다 군에 유리한 때
2. 인근이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92조의3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중 "한다"를 "하며,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수가 제23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

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제3항중 "하천법 제25"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제5항제3호중"(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 포함)"으로 하며, 후단부분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5조(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시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함(제2항·제4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사 유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③(생 략)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하는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	**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③(현행과 같음)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영 제80조의2 규정에 공유재산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⑤(생 략)	⑤(현행과 같음)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①----------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99. 5.31〉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 영 제78조제2항 신설 관련

현 행	개 정 안	사 유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 등 법적 제한이 없다면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함(제2호 관련)
	3.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 조문정리(제11조제3항을 제7조제3항에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지역은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다.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포함) 및 특별시·광역시 동지역의 경우는 소액재산 규모를 상향 조정(제3호가목 관련)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 -----행정재산·보존재산--------- ----------.	○ 자귀수정
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삭 제〉	○ 조문정리(제7조제2항제3호에 포함)

현 행	개 정 안	사 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지역 : 30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일반시지역 : 600제곱미터이하 토지 3.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 900제곱미터이하 토지 4. 시가 1천만원이하의 기타재산	③〈삭 제〉	○ 조문정리(제7조제3항제3호에 포함)
④(생 략)	④(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 ---------- ---------- ---------- ----------	○ 자귀수정

현 행	개 정 안	사 유
②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재산·보존재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삭 제〉	○ 제3호 내용과 중복 규정(제3호 내용으로 조치 가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기간만료 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 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	○ 자귀수정
제14조(사용허가 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 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 자귀수정
1. ~ 6.(생 략)	1. ~ 6.(현행과 같음)	
7.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7. 사용·수익허가----------	
8.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8. 사용·수익허가 ----------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 ---------- ---------사용·수익허가부--------- ----------.	○ 자귀수정
제19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 ---------- ----------.	
1. ~ 3.(생 략)	1. ~ 3.(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기전에 규정되어 동법 제18조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치시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	○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수로 변경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현 행	개 정 안	사 유
	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노력으로 투자유치를 한 경우만 적용토록 함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1. ~ 3.(생 략)	1. ~ 3.(현행과 같음)	
4.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	4. 〈삭 제〉	○ 부칙규정에 2000.12.31까지 한시 규정으로 되어 있어 삭제(IMF기간동안 적용)

현 행	개 정 안	사 유
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5.(생 략)	5.(현행과 같음)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 생활보호법 폐지로 용어 정비
② ~ ③(생 략)	② ~ ③(현행과 같음)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현행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규정과 중복되고, 동 규정에서 연 3% 내지 8%의 이자를 정한 취지(재산에 따라 탄력적 적용)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 규정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현 행	개 정 안	사 유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고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 1000분의 50이상---------- ---------- ---------- 1000분의 25이상-----. ②---------- ---------- ----------1000분의 10이상----.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사용요율·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 적용의 탄력성을 부

현 행	개 정 안	사 유
③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삭제 '90.11.10〉 2. 〈삭제 '90.11.10〉 3.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1. ~ 2.(생 략)	④---------- ---------- 1000분의 40이상--------. 1. ~ 2.(현행과 같음)	
⑤(생 략)	⑤(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사 유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⑥---------- ---------- ---------- ----------1000분의 25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1000분의 10이상 -------.	
⑦ ~⑨(생 략)	⑦ ~⑨(현행과 같음)	
〈신 설〉	⑩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2.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지역으로서	○ 공장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유인책 필요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생략)	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현행과 같음)	
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②〈삭 제〉	○ 영 제100조의5(대부·사용료·매각대금의 체감) 도입(2000.10.20 개정)으로 이 규정과 상충되는 조항 정비

현 행	개 정 안	사 유
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 할 수 없다.	③ 〈삭 제〉	○ 영 제100조의5(대부·사용료·매각대금의 체감) 도입(2000.10.20 개정)으로 이 규정과 상충되는 조항 정비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 3.(생 략)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의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 1. ~ 3.(현행과 같음)	○ 자귀수정(공장건설을 삭제함으로써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임대료는 법정용어가 아니므로 삭제)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6.(생 략)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6.(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신 설〉	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함
〈신 설〉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 전세금 제도 도입(영 제100조의3제2항)에 따른 세부처리기준을 정함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신 설〉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공~~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92조의3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삭 제〉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조문정리(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고 제4항을 제2항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 ----------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영 제100조제6항·제7항의 매각대 연체이자 적용 방식을 사용료·대부료·변상금에도 적용키 위함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23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 제22조제1항제4호가 삭제되어 조문을 정리하였고 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

현 행	개 정 안	사 유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준용)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 범위등) ① ~ ②(생 략)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 3.(생 략) ④(생 략)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 범위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 ---------- ------하천법 제33조---------- ---------- ---------- ---------- ---------- ---------- ----------. 1. ~ 3.(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 ---------- ----------.	○ 하천법 개정에 따름

현 행	개 정 안	사 유
1. ~ 2.(생 략)	1. ~ 2.(현행과 같음)	
3.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 4.30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바닥건물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	3. ---------- ---------- ---------- ---------- ---------- ---------- ---------- ----------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 - ---------- ---------- ---------- ---------- ---------- ---------- ----------	○ 국유재산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고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매각으로 명문화 함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 ---------- 분할매각-------.	

관 계 법 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09조 (공공시설설치및관리)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①법 제8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 제10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 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자는 당해 관리 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10을 하한으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 계산할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90.11.6, 99.4.30〉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2 (공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급,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대부,사용,신탁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데 기여한 때에는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0·20]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7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특례) ①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반환의 원인에따라 다음각호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일정금액을 공제한후 일시에 납부하게 할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공유재산의 종류) ②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제49조 (대지의분할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제한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대금납부와 연납) ②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수 있다.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종류등)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하되,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 (문화,의료 기관 및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청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수도권지역이나 수도권 및 그 인근 시도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제1차 소속기관 및 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청사 또는 사무소를 제외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①

1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

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하는 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5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체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 또는 사용을 위한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또는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예정가격을 낮출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잡종재산등의 매각등에 관한 특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수 있다. 신설 2000.10.20〉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다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 계산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격 결정은 사용,수익허가 기간중 연도마다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산의 가격은 결정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5조 (변상금)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12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수 있다.

강 원 도

우 200-700 춘천시 봉의동 15 / 전화(033)249-2315 행정2554 / 전송249-4028
세무회계과 과장 손 호 정 사무관 이경호 담당자 김종일

문서번호 세회 13330~996

시행일자 2001. 4. 4(5년)

(경 유)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재산관리담당과장

선결	장		지시	세무회계과 이행 개정
접수	일자 시간	2001. 4. 07	결재·공람	
	번호	1966	담당주사	
처리과	재 무 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공유재산관리조례(규칙)중개정조례(규칙)표준안 시달 P28 수정회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수도권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대폭 인하하는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규칙)중개정조례(규칙)표준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시달되었으니 아래 사항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개정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시군에서는 동 표준안을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개정토록 하고

2. 동 표준안의 각 규정중 『도지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뜻하고 『도』는 『서울특별시·광역시, 시·군·자치구』를 뜻하므로 각 자치단체는 개정안 작성시 용어를 바꾸어 개정

3. 동 표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번 개정안에 전부 포함하여 정비

붙 임 : 가. ○○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1부.
나. ○○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표준안 1부. 끝.

강 원 도 지
전결 자치행정국장 박영환

수신처 : 더(01 ~ 18)

" 국민의 고향 HAPPY 700평창"

평 창 군

군보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장
람	

제 175호 2001. 5. 12 (토)

조 례

○ 평창군조례 제1664호(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 ····· 2
○ 평창군조례 제1665호(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2
○ 평창군조례 제1666호(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 ····· 5
○ 평창군조례 제1667호(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5
○ 평창군조례 제1668호(평창군이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6
○ 평창군조례 제1669호(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 6
○ 평창군조례 제1670호(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 ····· 7
○ 평창군조례 제1671호(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 7
○ 평창군조례 제1672호(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 ····· 8
○ 평창군조례 제1673호(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 8
○ 평창군조례 제1674호(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9
○ 평창군조례 제1675호(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 10
○ 평창군조례 제1676호(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 ····· 11
○ 평창군조례 제1677호(평창군도시계획조례) ····· 11

규 칙

○ 평창군규칙 제901호(평창군반운영규칙중개정규칙) ····· 32
○ 평창군규칙 제902호(평창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의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32
○ 평창군규칙 제903호(평창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 ····· 34
○ 평창군규칙 제904호(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칙폐지규칙) ····· 34
○ 평창군규칙 제905호(평창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 35

훈 령

○ 평창군훈령 제244호(평창군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 36

고 시

○ 평창군고시 제2001-136호(개간사업 시행인가 고시) ····· 50
○ 평창군고시 제2001-137호(개간사업 시행인가 고시) ····· 51

공 고

○ 평창군공고 제2001-138호(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 공고) ····· 52
○ 평창군공고 제2001-145호(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3

회 람								

발행 기획실 (☎ 033 - 330 - 2221)